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54 발의연월일: 2021. 3. 12.

발 의 자:김선교・이철규・김예지

김석기 · 정운천 · 박대수

윤창현 · 김용판 · 성일종
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영속성이 중요한 국가필수선박의 총 목표척수가 원활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, 특히, 선박의 종류별로 구분 시 석유·휘발유 등 핵심 자원을 주로 실어 나르는 유조선의 목표 대비 지정 척수는 매년 부족한 실정으로,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필수선박의 목표 지정척수 달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

바지하고자 함(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

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국가필수선박을 운영하고, 항만운영협약"을 "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"으로 한다.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의 책무) ① (생 략)	제3조(국가의 책무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국가는 <u>국가필수선박을 운</u>	②
<u>영하고, 항만운영협약</u> 을 유지하	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
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	<u> 만운영협약</u>
노력하여야 한다.	
제5조(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	제5조(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
운영) ① (생 략)	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	2
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	
경우 비상사태등에 대비한 필	
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	
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<u>이 경우 해양수산부장</u>
	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목표 지
	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
	야 한다.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